

KBIZ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

www.kicic.or.kr

(우)0399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34(성산동) (성산동 642-4)
관리부 부장 장현정 / 전화 02-336-3670 전송 02-336-3604 / jhjkicic.or.kr

문서번호 방통협(관) 제595호

2018. 11. 1.

수 신 전조합원

참 조

제 목 『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개정사항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중앙회 정책총괄실-738 (2018.11.1.) 관련입니다.

3.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『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전부개정안이 2018.11.1.부터 시행됩니다. 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4.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(주요 개정사항)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
<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(2019.11.1.부터)>

1. 주식회사	
현행	개정안
▪ i)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, ii)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(70억원) 또는 종업원 수(300명)가 일정규모 이상	▪ 4개 요건(자산 120억원 미만, 매출액 100억원 미만, 부채 70억원 미만, 종업원 수 100인 미만)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
2. 유한회사	
▪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“사원 수 50인 미만”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	
3. 대규모 회사: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	

※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조합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. 끝.

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주 대

